

# 예 산 총 칙

2020년도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계	675,500,000	20,265,000
일 반 회 계	662,600,000	19,878,000
일 반 회 계	662,600,000	19,878,000
특 별 회 계	12,900,000	387,00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114,000	33,420
지하수관리특별회계	940,000	28,200
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특별회계	2,197,000	65,910
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	35,000	1,050
주차장특별회계	8,614,000	258,42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예산 사업명세서"와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039,107천원으로 한다.

(일반예비비 5,539,107천원, 목적예비비 500,000천원)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8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